



스마트폰 수험총서

2026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빈출지문 암기노트

- 25년 포함 최근 기출 문제 지문
- 2회 이상 반복 출제 지문
- 53분 완성, 암기코드 제공



공부혁명
mbook.kr

도서명 : 공인중개사법 빈출지문 암기노트

ISBN : 979-11-7393-248-9

발간일 : 2026-05-11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김병연 교수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9,500원



[목차]

제1편 공인중개사법(p5)

제1장 총칙(p6)

제2장 공인중개사(p11)

제3장 중개업 등(p12)

제4장 지도·감독(p49)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p55)

제6장 보칙·벌칙(p58)

제2편 부동산거래신고법(p63)

제1장 총칙(p63)

제2장 부동산 거래의 신고(p64)

제3장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p72)

제4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p73)

제5장 토지거래허가구역(p75)

제6장 부동산 정보 관리(p82)

제7장 보칙·벌칙(p82)

제3편 중개실무법(p85~108)

제1장 주택 및 상가 임대차법(p85)

제2장 부동산실명법(p91)

제3장 경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p95)

제4장 집합건물법(p100)

제5장 분묘기지권과 장사법(p103)

제6장 농지법(p107~108)

[비고]

- 공인중개사법은 2회 이상 출제된 지문과 최근 4년(2022~25) 기출문제 지문 수록
-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중개실무법은 2회 이상 출제된 지문과 최근 6년(2020~25) 기출문제 지문 수록
- 하늘색은 중요 내용
- 붉은색은 중요도 최상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편 공인중개사법

[약어]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등록증

협회는 공인중개사협회

제1장 총칙

1. 정의

가) 중개

- 거래당사자간 **중개대상물**(이하 **대상물**)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권리 득실변경** **알선**
- 교환행위 자체는 중개아님

나) **공인중개사**(이하 **중개사**)

- **법에 의한 중개사자격** 취득한 자

- 개설등록과 무관

다) **중개업**

-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함

라)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공**)

- 법에 의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하
개설등록) 한 자

마) **소속공인중개사**(이하 **소공**)

- 개공 소속, 중개업무 수행 및 보조

- 개공인 법인의 **사원/임원인 중개사 포함**

바) 중개보조원(이하 보조원)

- 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
- 현장안내, 일반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

- 국토부에 둘 수 있다

가) 심의사항 (시/부/중/손)

- 시험 등 자격취득(시도지사 구속)
- 부동산 중개업 육성
- 중개보수 변경
- 손해배상책임보장

나) 위원장 1명 포함 7~11명

- 위원은 장관이 임명/위촉

다) 위원 소속 법인 등이 안건 당사자의 전/현
대리인이면 심의/의결에서 위원 제척

- 장관은 제척사유있는 위원이 회피않으면
해촉 가능

라) 과반 출석 개의, 출석 과반 찬성 의결

마) 위원 소속 법인 등이 안건 당사자의 전/현
대리인이면 심의/의결에서 제척

3. **중개대상물**

가) 중개가능

- 입목
- 공장재단, 광업재단
- **분양계약 체결된 완성 전의 동/호수 특정 아파트**, 아파트 분양권
- 기둥, 지붕, 주벽 있는 신축 중인 미등기 건물 등

나) 중개불가

- 근저당이 설정된 피담보채권
-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당첨되면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입주권

- 주택철거시 택지 공급받는 대토권
- 세차장구조물 등

제2장 공인중개사

가. 시험

- 장관은 정책심의위 의결 거쳐 시행

나. 자격증

- 1) 시도지사가 합격공고 1개월내 교부
-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
- 2) 유무상 불문 양도/양수, 대여, 알선 금지

다. 소공은 중개사 명칭 사용 가능

제3장 중개업 등

1. 개설등록

가. 중개사, 법인 아닌 자는 신청못함

- 소공은 신청못함

나. 기준

1) 실무교육 이수

- 법인은 대표/임원/사원 전원, 분사무소
설치시 분사무소 책임자가 이수

2) 건축물대장 기재 건물에 사무소 확보

- 가설건축물대장 제외

- 사용승인받은 기재 전 건물, 전세 포함

다. 법인

1) 자본금 5천 이상인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제외

2) 대표는 **중개사**

- 대표 제외한 임원/사원(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1/3 이상이 중개사

라. 첨부서류

1)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 등록청이 전자적 확인 가능하면 불요

2) 여권용 사진

3) 사무소/분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 건축물대장 미기재 건물은 기재 지연 사유
함께 제출

4) 외국에 주 영업소 둔 법인은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도 제출

5) 개공이 종별 변경시 등록신청서 다시 제출

- 종전 등록증 반납

6) 중개사자격증 사본은 제출안함

- 등록청이 중개사 자격 확인

마. 등록청은 법인인 개공과 중개사인 개공을

구분해 등록하고 신청 7일내 신청인에 서면

통지

2. 등록의 결격

- 가) 업무정지처분 받고 폐업신고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미경과
- 나) 피성년/피한정 후견인
- 다) 금고 이상 실형 선고
 - 집행 면제 3년 미경과
 - 집행유예 만료 2년 미경과
- 라) 법 위반 인한 300 이상 벌금 선고 3년
미경과
- 마) 결격 사원/임원있는 법인 등

3. 등록증의 교부 등

- 등록청은 등록증 교부, 보조원 고용신고